

교회 정관

2018. 5. 27. 제정

2020. 2. 23. 개정

2021. 2. 28. 재개정

더샘물교회

우리교회는 이 땅에서 예수제자로 하나님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할 사명의 본질에 충실하고 가정교회운동, 믿음계승운동, 선교운동이라는 핵심가치를 표방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교회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구원의 은총과 이것이 우리 삶에 효력 있는 믿음으로 입증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만 교회의 생명력이 유지될 수 있음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주권이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임하게 해야 한다는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 위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예배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가정, 이웃, 민족을 섬기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공동체를 지향함으로써 다음세대를 낳는, 주께서 우리 세대에 맡겨주신 사명에 신실한 교회로 서 가고자 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교회는 더샘물교회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 교회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리천로 268 베라프라자 3층에 둔다.

제3조(소속과 운영) 본 교회는 사단법인 한국독립교단선교단체연합회(Korean Association of Independent Churches and Missions; KAICAM)에 속하며 우리 교회가 기초한 설립정관에 근거해 운영해 나간다.

제4조(목적과 비전) 본 교회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토대 위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목적에서 예배, 훈련, 섬김과 봉사, 교제 및 다음 세대를 세우는 기독교 학교 운동과 선교 운동을 실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존립의 이유이며, 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원리와 가정교회운동의 토대 위에 예배, 양육, 섬김과

봉사, 교제의 사역을 진행한다.

2. 다음 세대에 믿음을 계승하고 하나님 말씀의 토대 위에 신앙 전통을 견고히 세우는 일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기독교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해 나간다.
3.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 지역복음화를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과 지역공동체의 전인적 회복을 도모해 나간다.

제5조(신앙 고백) 본 교회는 복미주개혁교회(CRC) 신앙고백에 근거하여 우리 신앙의 기준을 삼아 신앙고백을 작성하였다.

1.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을 통해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예수 제자들임을 천명한다.
2.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그분의 목적과 섭리에 따라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며, 세상은 창조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구현하는 무대임을 믿는다.
3.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 주셨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으며,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가 되심을 믿는다.
4.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성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구원역사의 완성과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을 위해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
5.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내주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하시며, 마음에 깨달음과 감동을 주셔서 주를 믿고 따르도록 이끄시는 분임을 믿는다.
6. 우리는 성경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구원을 위해 알아야 할 모든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성령의 조명과 깨닫게 하심을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는다.

7.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성령의 전으로

세워져 함께 믿음의 길을 걷어가는 그리스도의 신부 된 거룩한 교회임을 믿는다.

8. 우리는 예수께서 하늘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은 사명과 이 사명에 헌신해야 할 책임을

교회인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또 이 일은 지속적으로 다음 세대로 계승되어야 함을

믿는다.

9.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천국 복음의 확산을

위해 우리를 세우신 일상에서 맡겨주신 은사를 사용해 최선을 다해 말씀을

살아내야 할 성도들임을 믿는다.

제2장 조 직

제6조(조직) 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 된 교회로서 신구약 성경의 원리와

우리 교회가 정한 정관에 명시된 바에 따라 당회와 공동의회, 운영위원회를 조직,

구성하여 교회의 당면한 일들을 처리해 나간다.

제7조(소집) 당회, 공동의회, 운영위원회는 당회장이 소집하며 본 교회의 적절한 운영과 상기한

목적의 효과적 실행을 감독하고 살피는 일들을 진행한다.

제8조(의장) 당회, 공동의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당회장이 당연직으로 하며, 그 구성과 업무

및 직분자의 자격과 섬김의 영역에 대한 세부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A. 당회

1. 당회는 시무목사와 시무장로로 조직하며 당회장은 담임목사로 한다.

2. 당회는 매월 정기 당회 혹은 임시 당회의 형태로 모이되 1주일 전에 당회원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당회원 2/3의 동의하에 회집할 수 있다.

회의의 의장은 당회장이 맡으며 임원들은 그 모임에서 선출한다.

3. 모든 의결은 당회를 회집하여 의결함을 원칙으로 하나,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 혹은 온라인상으로 의결할 수 있다.

4. 당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당회는 영적 제반 사무를 처리하는 치리회이므로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괄한다.
- 2) 당회는 제반 예배를 주관하고, 학습과 세례받을 자를 문답하며, 부모를 권면하여 유아세례를 받게 한다.
- 3) 당회는 유아세례 받은 자를 문답하여 입교시켜 성찬에 참석하게 한다.
- 4) 당회는 교인의 이명증서를 교부하고 접수하며 제적도 한다.
- 5) 당회는 집사와 권사를 고시한다.
- 6) 당회는 장로, 집사와 권사를 임직하고 교회직원을 임면한다.
- 7) 당회는 각종 헌금을 실시할 시일과 방법을 작정한다.
- 8) 당회는 범죄자와 증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본 교회 교인이 아니라도 증인으로 소환 심문할 수 있고, 범죄한 증거가 명확할 때 시벌하고, 회개하는 자를 해별한다.
- 10) 당회는 교회의 영적 유익을 도모하며, 각 부속기관을 지도 감독한다.
- 11) 당회는 교회의 기본재산을 관리한다.

B. 공동의회

1. 공동의회 회원은 더샘물교회 정교인으로 당회가 지도하는 바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기로 작정하고 정회원 헌신 동의서에 서약하는 자로 한다.

2.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을 1주일 전에 공고한다.

- 1) 정기회: 1년 1차 이상 정기적으로 회집한다.
- 2) 임시회: a. 운영위원회의 청원이 있을 때
b.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c. 당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3. 공동의회의 회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 1) 당회가 요청한 사항
 - 2) 예산과 결산 승인 사항
 - 3)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 4) 직원(목사, 장로, 권사)의 선임, 선거 사항

C.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 회원은 시무교역자, 시무 장로, 목자, 팀장 및 기타 당회에서 결의한 자로 한다.
2. 운영위원회는 매월 셋째 주에 정기적으로 소집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 1) 회장이 운영위원회 소집을 필요로 할 때
 - 2)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운영위원회 임원: 운영위원회 회장은 담임 목사가 겸하고, 서기를 선정한다.
4. 개회 성수: 운영위원회 개회는 교회에 공고한 후, 예정한 시간에 출석한 자로 개회한다.
5. 회의 안건: 운영위원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공동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집행 사항.

- 2) 예산을 증액하거나, 용도 변경할 경우.
- 3) 보통재산과 특별헌금 관리사항.
- 4) 사역팀 보고 사항.
- 5)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사항.
- 6) 기타 중요사항.

제3장 가정교회

제9조(조직) 가정 교회의 조직은 더샘물교회 전체사역에 해당하는 큰 그림에서 가정 교회인 목장을 두며,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개편할 수 있고, 목장의 장인 목자는 당회장이 임명한다. 가정 교회의 조직, 목장 사역 원칙, 목자의 자격 및 역할 등의 제반 사항은 별도의 목장사역지침에 준한다.

제4장 교회 사역

제10조(사역) 교회의 존립의 목적에 합당한 예배, 양육, 교제, 섬김과 봉사, 복음전파 등의 사역을 시행해 나가며, 이를 위한 조직과 담당자를 둔다.

제11조(예산과 결산) 모든 사역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입안된 예산에 근거하여 재정 집행을 진행한다.

제5장 재산 관리

제12조(재산) 본 교회의 재산이라 함은 본 교회 소유의 부동산, 동산, 기타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제13조(재산 관리) 본 교회의 재산에 있어서 매도, 매수, 증여, 수증, 금융기관의 차입 및 담보 제공, 기타 일체의 행위는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하고 의결은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공동의회에서 결정한다.

제14조(대표자 선임) 부동산 등기신청의 대표자는 당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모든 재산의 등기는 더샘물교회 명의이어야 하나 행정상의 편의 혹은 법적 요건에 따라 공동의회 의장이 주체가 될 수 있다.

제6장 재정 관리

제15조(재정) 본 교회의 재정은 헌금과 헌물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6조(회계년도) 본 교회 회계연도는 당회의 결의로 한다.

제17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당회장은 다음 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당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와 공동의회의 승인을 얻는 절차를 거친다. 당회는 예산안 작성을 위해 예산소위원회를 구성하며 예산소위원회는 매년 11월 마지막 주까지 예산안을 당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재정의 원칙) 재정은 정관 제 4조에 부합되고 균형 있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년 1회 이상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교 인

제19조(교인의 구분 및 신급별 문답자격) 교인은 그 신급에 따라 원입인, 학습인, 유아세례교인,

입교인, 세례교인으로 구분하며 신급별 문답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학습문답 후보자는 원입인으로 6개월 이상 공예배에 참석하는 15세 이상자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6개월이 미달해도 문답할 수 있다.
2. 유아세례문답 후보자는 2세 이하로 하고, 최소한 부모 중 1인이 정회원 이어야 한다. 단, 당회의 결의로 3세 이상이어도 줄 수 있다.
3. 입교 및 세례 문답 후보자는 15세 이상자로 한다.
4. 세례문답 후보자는 학습인으로 6개월 이상 경과한 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정회원은 목장에 소속된 세례교인으로서 생명의 삶을 수료한 뒤 정회원 헌신동의서를 제출한 성도로 한다.

제20조(교인의 의무) 4조에 언급해 놓은 교회의 목적과 비전을 지향해 나가는 일들이 교인

개개인의 삶에 효력 있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다음에 명시된 의무들을 준용해 나갈 책임이 있다.

1. 교인은 신앙의 성숙과 영적 성장의 열매를 맺기 위해 교회가 정한 예배와 기도회, 가정교회 모임 및 각종 공중 집회에 참석해야 하다.
2. 교인은 교회가 추구하는 목적, 비전, 가치의 구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취지에서 교회가 정한 사역에 물질적 섬김으로 참여할 책임을 진다.
3.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이를 일상 가운데 적용하는 일에 힘쓰며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정진한다.
4. 이단 사설에 현혹되지 않고 신앙의 전통과 생활의 순결함을 지켜나가며 성도의 유익을 위해 교회가 안내하는 지침에 순종한다.
5.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모범을 전수함으로써 그들을 섬기는 예수 제자로 세우고 믿음을 계승케 하는 일에 헌신한다.

6. 선교적 삶을 지향함으로써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 가치가 삶의 전 영역 속에 구현되게 하는 일에 힘쓴다.

제21조(교인의 권리) 본 교회는 중세 로마 카톨릭의 특권화된 사제권에 저항하며

‘만인제사장설’의 신념을 주장했던 개혁가들의 전통에 입각해 모든 성도들이 주어진 은사와 재능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름받았고, 이 일을 효과적으로 섬길 권리가 주어졌음을 다음의 사항을 통해 선언한다.

1. 무흠 입교인은 성례에 참여할 권한이 있다.
2. 교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어진 은사와 믿음의 분량을 따라 봉사할 특권이 있다.
3. 모든 교인이 담당하는 봉사와 섬김은 그리스도의 사역자(使役者)로 부르심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게 하셨으므로 모든 사역자의 지위는 동등하며 서로의 맡은 바를 존중해야 한다.

제8장 직분자

A. 장로

제22조(장로의 구분과 선임) 장로는 시무장로와 사역장로로 구분하되 별도의 시무장로선거관리 규정에 의하여 선임한다.

제23조(장로의 자격) 장로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무장로는 45세 이상 65세 이하의 남자 입교인으로 무흠히 7년을 경과한 정회원이어야 하며, 사역장로는 연령의 상한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2. 신앙과 행위가 복음적이고 본이 되는 자

3.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는 자
4. 공사간 생활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
5.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6. 성품이 원만하여 덕망이 있는 자
7. 목자로서 일정의 분가를 한 자

제24조(장로의 임직) 시무 장로로 선출된 자는 당회의 지도로 6개월 이상 교육을 받고 장로 고시에 합격하면 교회에서 안수로 임직하며, 사역장로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25조(장로의 직무) 장로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는 일
2. 교회의 영적 관계를 살피는 일
3. 교인을 심방, 위로, 교훈하는 일
4. 교인을 권면하는 일
5. 교인들이 설교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여부를 살피는 일
6. 언약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
7. 교인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
8. 목회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목사에게 알리는 일

단, 사역장로의 경우 위 1항은 제외하며, 당회원이 될 수 없다.

제26조(명예장로의 자격) 명예장로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더샘물교회에서 현재 목자로서 섬기고 있는 65세 이상 된 성도
2. 3년 이상 더샘물교회 및 더샘물교회가 인정하는 가정교회에서 목자로 섬긴 경험이 있는 65세 이상인 성도

B. 권사

제27조(권사의 구분과 선임) 권사는 시무권사와 사역권사로 구분하되 별도의 시무권사선거관리
시행세칙 및 사역권사 제규정에 의하여 선임한다.

제28조(권사의 자격) 권사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무권사는 40세 이상 65세 이하의 입교인으로 무흠히 5년을 경과한 정회원이어야
하며, 사역권사는 연령의 상한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2.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
3. 좋은 명성과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자
4. 목자로서 일정의 분가를 한 자

제29조(권사의 임직)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6개월 이상의 교육을 받고 권사 고시에 합격하면
교회에서 안수로 임직하며, 사역권사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30조(권사의 직무)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심방하되 특히, 병자와 궁핍한 자, 환난
당한 자, 시험 중에 있는 자와 연약한 자를 위로 격려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쓴다.

제31조(명예권사의 자격) 명예권사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더샘물교회에서 현재 목자로서 섬기고 있는 65세 이상 된 성도
2. 3년 이상 더샘물교회 및 더샘물교회가 인정하는 가정교회에서 목자로 섬긴 경험이
있는 65세 이상인 성도

C. 집사

제32조(서리집사의 자격 및 임명) 다음의 사항에 따른다.

1. 세례, 입교인으로서 당회가 지도하는 바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기로 작정하고 정회원

헌신 동의서에 서약하는 자.

2. 35세 이상의 입교인으로 무흠히 5년, 세례 후 2년이 경과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

3. 서리집사는 당회에서 임명하되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33조(서리집사의 직무) 서리집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빈곤한 자를 돌보며 교회의 목장, 봉사, 서무, 회계와 구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9장 목사, 장로, 권사, 직원의 임기

제34조(목사의 임기) 위임목사는 6년을 임기로 하며, 6년 시무 이후 1년간의 안식기간을 가질 수 있고, 안식기간 이후 당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신임을 거쳐, 공동의회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재 위임될 수 있다.

단, (1) 임기(6년) 시무 후 정년(70세)의 잔여기간이 6년 미만일 경우는 신임투표 후 안식년을 갖게 한다.

(2) 은퇴 일자 는 만 70세 되는 해당 년 12월 마지막 주로 한다.

제35조(장로의 임기) 시무 장로는 만 5년의 임기를 원칙으로 하되 1년 안식 후 당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공동의회에 상정,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1차에 한해 재임명될 수 있다.

단, (1) 임기(5년) 시무 후 규정한 정년(70세)의 잔여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는 1년의 안식년을 갖지 않고 신임투표로 재임명될 수 있다.

(2) 장로는 은퇴 연령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원하는 경우 70세 이상이 되면 해당년 12월 마지막 주에 은퇴할 수 있다.

제36조(권사의 임기) 권사는 원칙적으로 임기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원하는 경우 70세 이상이 되면 해당 년 12월 마지막 주에 은퇴 할 수 있다.

제37조(부목사, 행정 직원의 임기) 부목사, 직원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으로 하며 임기 전 당회의 3분의 2 이상 신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단, 1년 임기 이후 면직을 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항이 발생될 경우, 당회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임기를 종료할 수 있다.

제10장 부 칙

제38조(준용) 본 정관의 미비 사항과 향후 교회운영에 의해 보완해야 할 경우는 성경적 가르침의 원리와 우리 교회가 정한 정관에 근거한 세부적 지침 및 내규에 준하여 처리하며 당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39조(대표권 위임) 당회는 당회장의 요청에 의해 특정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회장을 대리하는 대표자를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된 대표자는 한정된 업무와 기간 동안 일을 수행한다.

제40조(개정) 본 정관의 개정 및 수정이 필요할 시 당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의회 재적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41조(시행) 개정 및 수정안의 시행은 공포한 시점에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